

# 美國의 輸出統制法

(株)大韓航空 提供  
韓國航空技術研究所

## 序論

지난 10餘年間 防衛產業의 진행과정에서, 關聯資料와 技術 그리고 물품들의 移讓이 일일이 美國行政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고 어려운 경험을 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對 美國政府業務는 대개 美國의 기관에서 代行해 주기 때문에 美國의 輸出統制法에 대해서 잘아는 韓國의 民間業體는 아주 드물다. 이들 法은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와 “The Arms Export Control Act”이다. 이들의 法規는 全部 약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龙大なる 것이고 理解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法規를 잘 이해함으로써 技術移讓이나 防產品購買의 交涉이나 절차를 유익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參考文獻에 이들 法規의 骨子가 잘 설명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발췌하였다.

## 美國의 輸出統制에 대한 要約(Ref.에서 발췌)

일반적으로 말하면, 美國의 技術移讓, 政策, 그리고 規定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는 간단하다. 美國의 領域 밖에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 어떤 商品이나 資料 또는 서서비스가 어떤 이유간에, 어떤 期間동안에 걸쳐, 어떤 方法으로 전해졌든, 실질적으로 그것은 輸出이다. 더 나아가서 美國內에서 外國人과 기술정보에 관한 口頭論議를 하는 것조차도 輸出로 간주된다.

實在 物件이든 혹은 情報이든 간에 기술이란, 商品 혹은 資料의一部分이며 반드시 輸出 認可節次를 따라야 한다.

오늘날 多國籍 航空宇宙去來業務는 強大國에게도 커다란 사업이다. Spare 部品과 支援 서비스를 포함한 航空機의 판매와 航空技術은 美國에 있어서 주요한 貿易黑字의 원천이다.

SDI 와 宇宙停車場을 위한 宇宙商品과 서비스市場은 곧 航空機市場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 航空宇宙商品이나 技術 또는 서비스를 사들이려는 美國의 기업체나 個人에 의해 행해지는 각 去來에서, 유럽의 對象業者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作成에 필요한 資料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資料의 輸出을 필요로 한다.

기술陣들은 試製裝備나 部品들 그리고 情報를 서로 교환할지도 모른다. 그 후에는 spare 部品과 改良技術을 사들여서 고객으로 하여금 協商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宇宙는 커다란 軍事的 潛在力を 보유하고 있다. 彈道미사일과 같은 많은 戰略武器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宇宙에서 작동한다. 모든 現代軍事施設에는 정보, 지령, 제어 및 통신의 機能을 위한 중요한 宇宙裝備들이 요구된다.

美國과 蘇聯 모두가 宇宙關聯 豫算의 대부분을 軍事事業에 쓰고 있다.

遠隔探查와 通信, 그리고 航法衛星을 작동시키는 感知器,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SDI 시스템의 尖端技術 部分은 20世紀 4/4分期의 极히 중요한 군사기술이다. 이들 宇

宇宙飛行體를 軌道에 운반할 發射體의 부품들은 우리 現代時代의 國家的 軍需品이다.

그들은 로켓엔진, 高壓低溫펌프, 그리고 輕量構造物 등과 發射體와 宇宙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설계, 시험, 평가 그리고 製作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精巧한 시험장비 등을 포함한다.

어떤 商業去來는 일반적인 國際貿易으로서 免許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통제는 美國企業은 國際市場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인식에 의해서 완화된다.

그러나 로켓, 宇宙船, 宇宙電子機器, 誘導시스템과 이에 관련된 技術資料와 서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SDI 部品과 서비스는, 현재의 美國法으로는 軍需品으로 간주되며 다만 國家安保의 엄격한 요구조건에 준하여서만 認可될 것이다. 이와같은 統制에 대처하는 것은 美國의 宇宙商業計劃의 성공을 위해 극히 중요할 것이다.

### 輸出統制의 種類

1949年 이전의 戰爭期間들을 제외하고는 전혀 統制받지 않았던 美國으로부터의 輸出이 지금은 세가지의 主要한 과정을 통해 통제받고 있다.

1. 商品統制目錄(Commodities Control List)에 있는 商品과 技術資料는 1979年 制定된 輸出管理法令(Export Administration Act)에 명기된 認可要求條件에 따른다. 이法令은 1983年에 발효만기가 됐지만, 그의 規定은 國際非常經濟大國法令(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데 이전 大統領의 國家非常事態宣布에 의해서 再發效되었다. 이 認可節次는 상세한 일련의 輸出行政規約에 따라 商務省의 輸出統制管理部(Export Control Administration)에 의해 관리된다.

2. 美軍需品目錄(United States Munitions List)에는 慣例의으로 武器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의 多數品目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目錄에 포함된 品目들은 國務省傘下의 軍需品統制處(Office of Munit-

ions Control)에 의해 시행되는 武器輸出統制法令(Arms Export Control Act)의 認可要求條件을 따른다.

國務省은 이 法令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 免許를 발행할 것인지를決定하는데 대한 큰 裁量權을 가지고 있다.

3. 만약 軍事技術에 관한 特許가 美國內에서 出願되었다면, 이 出願은 國防省과 國家安全部에 의해 檢討를 받는데, 두 곳 모두 이 技術을 秘密에 불이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세번째 過程은 지금 우리의 討論對象의 범위밖이지만, SDI 技術로부터 商業의 利得을 얻고자 하는데 있어서 극히 중요할지도 모른다.

이 모든 要求條件과 制約事項은 宇宙와 관련된 제품, 資料 그리고 서비스에 적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輸出免許도 發行後 아무때나 人爲의으로 취소되고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982年 시베리아 送油管(pipeline) 論爭 당시 야기되었던 것처럼 免許의 취소는 절대적이고 邊及될 수도 있다. 國家安保政策의 변화는 禁止令(embargos)을 적용시킴으로서, 이미 終結된 輸出去來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逆效果를 미칠 수 있다.

1979年 輸出管理法令(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商工部一輸出管理處(Office of Export Administration—OEA)

어떤 規制商品이나 技術資料를 통제가 적용되는 어떤 目的地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각기 有效한 輸出免許의 形태로 된 特別한 認證이 필요하다. 통제에 해당되는 商品들은 聯邦規定法典(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일부인 商品統制目錄에 명기되어 있다. 이 目錄은 대단히 厚책으로서 놀랄만큼 자세하다.

被規制技術資料(controlled technical data)란 “어떤 물품이나 素材에 사용되거나, 사용에 適用될 수 있는 어떠한 形태의 情報”로 설명된다.

그 資料란 모델, 試製品, 青寫真 혹은 作動指針書와 같은 有形의 形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技術서비스와 같이 無形의 形태로 될 수도 있

다. 이 技術資料의 輸出이란 i) 技術資料를 美國 밖으로 실제로 수송하거나 전달하는 것 ; ii) 技術資料가 美國으로부터 외국으로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또는 그려 할 目的으로 어떤 技術資料를 美國內에서 공개하는 것 ; iii) 美國에 근원을 둔 어떤 技術資料를 外國에 공개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技術資料의 公개란 특히 美國에 根源을 둔 장비와 시설에 대한 外國의 視覺的 檢查와 美國內外에서의 口頭에 의한 정보교환을 포함한다. 이 認可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地球上의 國家들은 認可條件 및 政策의 차이에 따라 일곱개의 國家그룹과 캐나다로 구분되어 왔다.

## 國家그룹

### 캐나다

T 그룹國家 : 南北美와 쿠바를 除外한 카리브  
海 沿岸國家

V 그룹國家 : 西部유럽, 中東, 아프리카, 非共產圈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中共(若干의 制約 有)

Q 그룹國家 : 루마니아

S 그룹國家 : 리비아

W 그룹國家 : 폴란드, 헝가리

Y 그룹國家 : 蘇聯, 東部유럽共產國家, 라오스, 蒙古

Z 그룹國家 : 쿠바, 캄퓨챠, 北韓, 베트남

## 類型審查

### T 와 V 그룹國家

國家安保를 理由로 輸出統制를 받는 商品들의 거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디지탈 컴퓨터와 같은 것으로, 이와 같은 品目은 商品統制目錄(Commodity Control List)에 A와 B로 表記되어 있다.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目的地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有效한 輸出免許證이 있어야 한다. T 와 V 國家 그룹에 대한 規制品目の 수출을 허가 또는 禁止하는데 있어서의 OEA의 政策은, 그 수출이 反美可能性이 있는 國家(즉 Q,S,W,Y,Z 그룹國家)로 轉換輸出되거나 再輸出될 위험이 큰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 軍事的 潛在力審查

### Q,S,W,Y,Z 그룹國家

반면, 目的地가 Q,S,W,Y 그룹에 속해 있는 國家일 경우, 規制商品의 輸出申請은 이商品이 目的地國家의 軍事的 潛在力에 크게 기여할 것인가에 근거를 두고 검토된다. Z 그룹에 속해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輸出이 금지되어 있다.

## 一般輸出免許 (General Export Licenses)

輸出管理規定(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은 特定有效 輸出免許가 없더라도, 美國에 근원을 둔 商品을 일부 또는 모든 目的地에 수출을 허용하는 일련의 일반輸出免許를 설정해 놓았다. 이를 一般免許 중에는 一般免許 "GLV"도 들어 있는데, 이 免許는 T 와 V 그룹國家들 內의 목적지로 一定制限額(일반적으로 1,000弗. 이하)의 規制商品輸出을 許可하고 있다.

商品統制 目錄에는 각 項目마다 一般免許 GLV로 수출할 수 있는 최대 額數가 표기되어 있다. 이 額數制限은 特定商品에 따라 100弗, 250弗, 500弗, 1,000弗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核擴散禁止의 이유로 통제되는 어느 商品들은 一般免許 GLV로는 어느 곳이든 간에 수출할 수 없다.

## 分配免許 (Distribution Licenses)

有效免許가 請求한 商品과 관련된 多重輸出業務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EAR는 어떤 特定한 조건과 제한된 狀況아래, 각각 有效輸出免許를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는 일련의 特수한 免許節次들을 만들어 놓았다. 이 特수한 免許節次中 가장 중요한 것이 分配免許이다. 이 分配免許는 輸出業者가 1年 동안(2년까지 更新될 수 있다) 國際의 마아케팅 計劃에 따라 明記된 목적지내의 認可된 受諾人에게 規制商品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反復輸出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 技術免許 (Technical Licenses)

EAR는 商品뿐 아니라 모든 컴퓨터 소프트

웨어를 포함한 技術資料의 수출을 통제한다. 直接的인 戰略的 應用性이 있는 資料를 제외한 大부분의 技術資料는 一般免許로서 T 와 V 그룹의 國家(아프가니스탄은 例外)들에게 수출될 수 있다.

核武器의 生産 및 운반에 관련된 戰略的 技術資料, 空中航法 및 誘導시스템 그리고 民間航空機은 有效한 수출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T 나 V 그룹에 포함되는 나라의 最終使用者에게 기술을 수출하거나 免許를 주려고 제안하고 있는 한 輸出業者는, 技術資料나 그의 矢接적인 產物이 規制對象目的地에 再輸出되지 않는다는 最終使用者의 書面保證이 필요할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有效輸出免許 없이도 수출이 가능하다.

#### 武器輸出統制法令, 國務省一軍需品統制處

武器輸出統制法令은 大統領에게 防衛品目 및 防衛서어비스의 수출입 통제와 軍需品目錄(Munitions List) 指名의 권한을 부여한다. 輸出業者는 軍需品目錄에 수록된 어느 品目이라도 수출하고자 할 때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大統領은 이 法令에 의한 輸出統制機能을 國務長官에게 위임했다. 國務省은 이 法令에 의한 規定을 관리하기 위해 軍需品統制處를 설립했다. 이것이 武器의 國際運送規定(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ITAR)이다. 로켓, 宇宙船, 宇宙電子機器 그리고 誘導裝置 등은 ITAR에 의거한 輸出免許를 요하는 防衛品目으로써 軍需品目錄의 한 부분으로 特別區分되어 있다. 많은 SDI 品目이 軍需品目錄에 포함될 것이다.

防衛서어비스란 防衛品目的 設計, 엔지니어링, 개발, 생산, 처리, 제작, 사용, 작동, 오바호울, 수리, 정비, 개조 혹은 再組立에 있어서 外國人에게 支援을 제공함을 포함한다. 防衛서어비스는 또한 美國內나 海外에서 外國人們에게 어떤 技術資料를 제공함을 포함한다.

技術資料란 防衛 서어비스와 防衛品目에

관련한 秘密情報뿐만 아니라, 防衛品目的 설계, 엔지니어링, 개발, 생산, 처리, 제작, 사용, 작동, 오바호울, 수리, 정비, 개조나 再組立에 직접 관련이 있는 情報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青寫眞, 圖面, 寫眞, 計劃書, 作圖, 컴퓨터 소프트 웨어와 記錄 등과 같은 形태의 情報들이 이에 포함된다.

ITAR 規定하에서 輸出된다 함은 단순히 어떤 境界, 예를 들어 空間의 境界를 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項은 國境을 넘지 않는 去來도 또한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의 한 예를 들자면, 宇宙商業化 企業體가 宇宙船이나 로켓에 대한 資料를 外國購買豫定者에게 제공할 때와 같이, 비록 이 資料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 美國內에 居住하더라도 外國人們에게 이와 같은 技術資料를 노출시키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規定은 言論의 자유를 보장하는 第一憲法 改定(First Amendment)에 비추워 볼 때 확실히 의심스러운 것이지만, 새로운 ITAR이 겨우 1985년에 效力を 발생했기 때문에 이 第一憲法改定에 관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만약 어느 宇宙產業體가 로켓이나 宇宙船을 外國人們에게 팔거나 宇宙로 발사함으로써 수출하기를 기대한다면, 이 會社는 軍需品統制處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이 登錄은 1年에서 5年間 有效할 수 있다. 여기에는 順應率에 따른 手數料가 있다.

ITAR에 따르면 로켓과 宇宙船 같은 어떤 商業宇宙 企業體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裝備들은 “중요한 軍事裝備”가 된다. 어느 會社가 1,400萬弗 이상의 中요한 軍事裝備에 대한 販賣를 호주, 일본, 뉴질랜드 또는 NATO 國家를 제외한 다른 國家에게 제시하거나 제안하고자 할 때는 軍需品統制處로부터 사전 認可를 받아야 한다. 만약 사전 認可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商品이나 서어비스 販賣 등 전반적인 輸出免許申請을 취소당할 수 있다. ITAR에 따른 로켓이나 宇宙船의 輸出에 대한 輸出免許取得은 실제로는 반드시 美國市民이나 美國에 永住하는 者의 免許申請에 의해서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購買者는 반드시 自身의 身元을 밝혀야 하고, 外國受託人은 1,400萬弗 이상의 로켓나 宇宙船 같은 중요한 軍事裝備를 사들일 경우에는 “最終 利用者 不讓渡確認書”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軍需品 統制處는 ITAR에 적용되는 다른 品目이나 서어비스의 輸出에 대해서도 그러한 證書를 요구할 수 있다.

1,400萬弗 이상에 달하는 宇宙船이나 로켓 등의 販賣는 議會의 檢토를 요한다. 軍需品 統制處는 이 檢토를 현재 30日간의 待機期間으로 다루고 있다. 만약 議會가 30日 이내에 이 輸出을 금하지 않는다면 國務省은 면허를 발행할 수 있다.

秘密이 아닌 技術資料의 수출에 대한 ITAR의 統制가 第一憲法改定에 保障된 言論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論爭이 있을 수 있다. 國務省은 技術資料의 定義에 대한 法的 解釋要求에 대응하여, ITAR에 의한 技術資料 統制에 대해 네 가지 制約을 부과하였다.

첫째, 技術資料는 반드시 軍需品 目錄에 명기된 特定 品目과 直接의이고 中요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둘째, 新開發에 대한 정보는, 그 情報가 美軍需品目錄에 수록된 品目の 技術水準을 향상시키는 경우에만 이 規制를 받는다.

셋째, ITAR은 일반적인 科學, 數學 혹은 엔지니어링 原則에 관한 情報를 특히 規制한다.

끝으로 美國內에 있는 어느 學術團體에 의해, 美國에 永住하며 共產國家市民이 아닌 성실한 正式從業員에게 技術이 노출됐다면 이것은 ITAR의 規制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 外國人이 軍需品統制處의 認可 없이는 이 技術資料를 다른 外國人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書面에 의해서 이미 통고받고 있을때만이 적용된다.

文字 그대로 해석하면 이 規約들은 實質적으로 美國 航空宇宙企業體가 外國人에게 SDI나 宇宙停車場의 일부에 대해서 제공하는 어떠한 情報도 발표에 앞서 이것이 免許를 필요로 하는지與否의 결정을 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그와같은 免許가 필요치 않더라도(그리고 이것은 단지 小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發表에 대한 禁止規制, 즉 이와같은 法의 위반이 拘束, 罰金 그리고 販賣되고 있는 品目的 몰수와 같은 行政的인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外國顧客에 대한 美國航空宇宙業體들의 商品 및 서어비스의 販賣를 확실히 그리고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참 고 문 헌

Art Dula, “Space Law for Business Profits”, Conference Proceedings, Space Commerce '87, Switzerland, Interavia Publishing Group, June 16~20, 1986, pp. 111~117.

